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문의 : 재벌개혁본부(권오인 국장, 오세형 팀장, 김건희·정호철간사 02-3673-2143)
- 시행 : 2019. 9. 24. (화)
- 제목 :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총16매)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울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 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시간	순서	비고
10:50~11:00	기자회견장 정리	사회자 (참여연대)
11:00~11:02	기자회견 시작	
11:03~11:08	취지 설명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11:09~11:24	대표 발언 (각 5분) * 사회자가 발언자 소개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참여연대 김경울 집행위원장
11:25~11:27	마무리	사회자 (참여연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 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9. 9. 24(화).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나다 순)

11 취지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 왜 '99% 상생연대'인가

-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 양극화, 공정'임. 소득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현상이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게다가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갑을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원하청 구조와 같이 '을과 을', 심지어는 '을과 병, 정'의 갈등으로 파생되고, 정작 그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갑'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대기업의 일자리 감축,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다시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음. 또한 한편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음.
-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99% 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임.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함.

2 법안 제/개정 요구안

재벌 특권 내리고!!!

① 재벌 등 황제경영 방지

1) 관련 법안 :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 김종인 의원 등 발의 (2016~)

2) 필요성

-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임. 아울러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의 경우에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음.
-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임. 특히 일반 주주, 소수주주들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 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견제하기 힘든 구조임.

3) 주요내용

-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을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총수와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보수, 계열사 간의 기업합병에 MOM Rule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이 33% 미만인 상장회사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동 제도로 선출함으로써 무력화된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MOM Rule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없는 상황임. 실효성이 약하기는 하나, 현재 상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상황임.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라도 법안 통과를 통해 미약하기는 하나,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재벌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1) 관련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법률안 (2018.11.30)

2) 필요성

-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지주회사를 특정 기업집단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벌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음. 또한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는 지주회사규제를 받지 않아, 지주회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지주회사제도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추가적 보완 입법이 절실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은 실효성 없는 수준으로 나열 되어 있음. 그 예로 일감몰아주기 대상 지분을 직접지분만 하도록 하고, 전속고발권 또한 경성담합에만 폐지, 지주회사제도 지분율 규제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여 매우 부족함.

3) 주요 내용

-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 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함.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기존순환출자의 해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직접지분 뿐만 아닌 간접지분 까지 포함,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등의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함.
- 정부안으로 제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및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 등의 기업집단법제, 전속고발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 통과시켜야 함.

③ 재벌 등 부동산 투기 감시

1) 관련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9.5)

2) 필요성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2007년 23.9조원에서 2017년 75.4조원으로 51.5조원(3.2배)이나 증가했음. 같은 기간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사로 1.6배가 증가했음. 특히 증가한 계열사 업종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이 동기 간 13개사에서 41개사(3.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음.

- 이는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아울러 이는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손 쉽게 토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이러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공정위 공시자료 등에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는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장부금액 총합계만 언급되고 있고, 보유 부동산 면적, 주소, 공시지가, 비사업용 토지 등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고 있음.

3) 주요 내용

- 이러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공정위 공시자료 등에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국회에는 2019년 5월 1일 이춘석 의원 등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 법률안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별로 보유한 부동산 건별(필지) 주소, 면적, 공시지가, 비사업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라도 통과되어, 감시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

④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1) 관련 법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이종걸의원 대표 발의 (2016.06.)

2) 필요성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 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음.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총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견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임.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음

3) 개정 및 제정 주요내용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유가증권(분자)과 총자산(분모)을 모두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게 함.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5)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 골목상권잠식 방지 법

1) 관련 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 홍익표의원 대표 발의 (2018.01.23.) 등 30여건

2) 필요성

- 유통재벌(신세계, 롯데등)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전문점, SSM(기업형수퍼마켓), 편의점, 온라인몰등 유통시장의 장악은 심각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있음
-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계약, 임대차 문제 외에도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매출 하락(평균 46.5% / 2014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형마트의 20~30배의 피해를 주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개정 및 제정 주요내용

○ 유통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도심내 진출방지등 입지규제

- 기존 전통시장중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등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여 보호하고,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 (도소매업, 외식업등) 을 확대 해서 실시함으로써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규제함
-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존속기한 폐지함

○ 지역상권의 중소기업 및 대규모점포내 종사자인 노동자들과의 상생방안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함
- 복합쇼핑몰 출점 개설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시민 권리 올리고!!!

① 노동회의소 설치 및 운영

1) 관련 법안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용득의원 대표 발의 (2019.2)

2)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특히 약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 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권익 보호와 제반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노동회의소를 모티브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내용

○ 중앙노동회의소

- (목적) 지역노동회의소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노동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로 노동회의소 회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회원) 지역노동회의소가 중앙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됨

○ 지역노동회의소

- (목적) 지역노동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역할) 국회, 정부, 지자체의 각종 법안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의견 제안, 법률 상담, 중앙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및 지원

- (회원 자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회원 가입 자격 부여

②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1) 관련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 (2016.12.)

2) 필요성

- 국민 절반이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주거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가구당 평균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지 않고 있음. 5%의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도 계약기간 내로 한정되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짐.

3) 개정 및 제정 주요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고의적인 주택 파손, 장기간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이 필요함

○ 전월세상한제 도입

- 계약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시까지 확대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

○ 표준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삼음.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③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1) 관련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강온의원 대표 발의 (2017.7)

2) 필요성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잉개입을 막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에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음. 노동자 이사의 참여는 이사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특히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정치적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3) 주요 내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함

공정사회 만들고!!!

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1) 필요성

- 한국경제의 재벌중심 수출지향적 성장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종재를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원청기업, 중간재를 생산하여 조달하는 중소기업=하청기업이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됨.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별로 확산됨
- 수직적 하도급구조와 교섭력 우위에 기초한 생산비용 절감압력이 하위 도급업체에게 그대로 전가. 이로써 하청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위축시키고, 이들이 외주화, 사내도급, 재하청 등과 같은 저비용 전략에 의존함에 따라 하도급 하위단계로 내려갈수록 임금 등 고용조건 악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별 대.중소기업간 경영실적 및 하도급구조 내 고용관계별 임금격차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대기업 원청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의 계층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인 하도급 관계와 이에 따른 시장 교섭력 격차로 인해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가중되어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술개발 투자유인을 저하시키며 지불능력의 감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격차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 등 노동조건 및 복지의 격차 확대는 대기업원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 외주화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고용분화와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직적.종속적 하도급구조는 사회적양극화를 구조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2) 추진 방향

- 산업.업종별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설치. 정책협의 기구를 통해 하도급법을 비롯한 법적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강화,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지원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 방안마련.

-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납품단가를 조정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또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성과를 공유키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야 함.
- 단가인하로 대표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 현재의 하도급법 규정은 원청업체의 일방적 대금감액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단지 '부당한' 감액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 또한 감액절차나 감액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법에서는 '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 발생시 하청업체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됨.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함.

②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점주들의 권리강화

1) 관련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김병욱의원 대표 발의 (2018.8.30.)
-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11.22.),우원식의원 대표발의(2018.11.06.)

2) 필요성

- 가맹본부 중심의 수익 극대화 정책으로 가맹점포의 무분별한 출점확대와 독점적인 상품 공급에 의한 가맹점의 경제적 피해가 확산 되고 있음
- 이에 가맹점주들이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들이 요구하는 상생교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출점정책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최저수익보장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함

3) 개정 및 제정 주요내용

-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의 단체구성 및 본사와의 협상력을 제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 함
- 무분별한 출점 정책에 대한 가맹점주의 수익 보장 방안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③ 대리점주에 대한 “갑” 질 예방과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도입

1) 관련 법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추혜선의원외 9인 발의(2019.1.24.)
- 우원식의원 외 17인 발의(2018.11.07.)

2) 필요성

-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본사의 “갑”질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실질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갑”질을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개정 및 제정 주요내용

○ 법 적용제외 조항의 축소

-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 저하
-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의 수준

○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협상권 도입

-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해야 함.